

변경대비표(집합투자규약)

1. 대상 펀드 :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증권 투자신탁2호[주식]

2. 시행일 : 2010년 8월 10일(화)

3. 주요 변경 내용 : 종류형 전환(C1, C-I 클래스 신설), 임의해지 관련 법개정사항 반영

(1) 종류형 전환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3조(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명 칭 등)	② 1~4 생략 5. (신설) ③ 신설	② 1~4 생략 5. 종류형 ③ 종류 C1, C-I 신설

구분	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	선취판매수수료	환매수수료
종류 C1	제한없음	해당사항 없음	90일 미만: 이익금 의 70%
종류 C-I	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,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)	해당사항 없음	90일 미만: 이익금 의 70%

구분		지급비율		
		종류 C1	종류 C-I	
가입자격 ^{주1)}		제한없음	전문투자자 ^{주2)}	
최초설정일		2005.01.07	설정전	-
수수료	선취판매수수료	-	-	-
	환매수수료	90일미만: 이익금의 70%	90일미만: 이익금의 70%	-
보수	운용보수	연 0.73%	연 0.73%	-
	판매보수	연 1.50%	연 0.05%	-
	신탁보수	연 0.04%	연 0.04%	-
	사무관리	연 0.03%	연 0.03%	-

(2) 임의해지 관련 법개정사항 반영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p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<p>(신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
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(주)